

의안번호	제 86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369 회)

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1월 9일

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1월 9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- 2019년 기금운용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2018년도말 조성액(A)	2019년도 운용계획			2019년도말 조성액(E=A+D)
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829,545	236,312	223,824	12,488	842,033

- 2019년 기금별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2018년말 조성액(A)	2019년말 조성액(B)	증감 (C=B-A)
계 (14개)	829,545	842,033	12,488
청소년육성기금	1,481	1,490	9
양성평등기금	6,700	6,703	3
통합관리기금	78,343	77,275	△1,068
지역개발기금	576,596	600,861	24,265
자활기금	2,196	2,110	△86
사회복지기금	28,922	28,269	△653
식품진흥기금	12,102	11,679	△423
남북교류협력기금	2,418	2,255	△163
체육진흥기금	2,686	2,724	38
중소기업육성기금	33,859	23,866	△9,993
투자진흥기금	8,186	8,314	128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	6,342	6,353	11
재난관리기금	35,872	34,795	△1,077
환경보전기금	33,842	35,339	1,497

3. 의안전문 : 첨부 (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붙임 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)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

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

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